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

1. 입법취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 전기차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부여

2. 관련절차

① 전기차충전시설 신고제도

- (신고주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①②③}(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체계적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시, 충전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신고하는 것이 적절

-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참고2 ②)
-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2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해당시설^{13쪽})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전기용량 포함) 등
- (신고시기)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계획수립 단계)

[변경신고 대상]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신고서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참고3-1)

※ 해당 신고제도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신고서 외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음

- (신고내용 통보)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본사 기술진단부)에 통보

② 전기차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참고2)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

-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① 사망 또는 부상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②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지급

- (가입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③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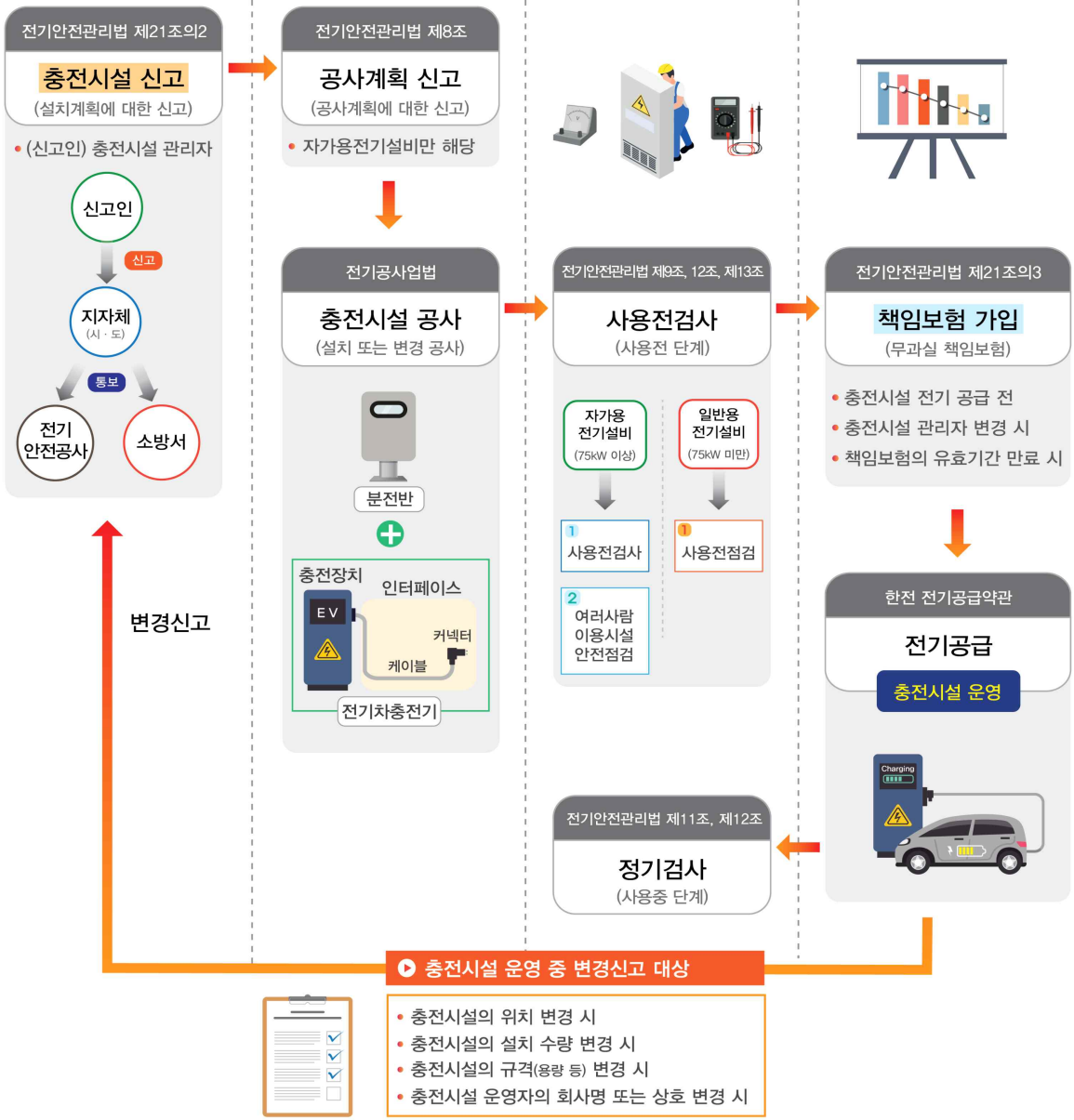
참고 1

업무 관련 프로세스

2025.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계획수립 설계·시공 검사 운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①②③}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종교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수련시설
 - 라. 공장
 - 마.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국방·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묘지 관련 시설
 - 타. 장례시설
 - 파. 야영장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참고 3-1

충전시설 신고 서식 / [참고] 설치신고 예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O]설치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김안전	전화번호 010-1234-5678 063-123-4567
	회사명 또는 상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 (설치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충전시설 설치 사업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화번호:063-123-4567)			
	충전시설 설치수량	지상	옥외 6개	합계: 6개	
		지하	1층 11개	합계: 11개	
	충전시설 규격	완속	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계: 11개
			스탠드형	5kW: 3개	3개
			벽부착형	5kW: 3개	3개
		과금형콘센트		5개	
급속	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계: 6개		
	스탠드형	50kW: 3개, 100kW: 3개,	6개		
충전시설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한국기후환경솔루션	운영수량	6개		
	회사명 또는 상호 한국기후환경스마트충전	운영수량	11개		

변경 사유	[]충전시설의 위치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O]설치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신고인 **김 안전**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참고 3-2

충전시설 신고 서식 / [참고] 변경신고 예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O]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김안전	전화번호 010-1234-5678 063-123-4567
	회사명 또는 상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신고내용	충전시설 위치 (설치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충전시설 설치 사업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화번호:063-123-4567)			
	충전시설 설치수량	지상	옥외 6개	합계: 6개	
		지하	1층 15개	합계: 15개	
	충전시설 규격	완속	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계: 15개
			스탠드형	5kW: 3개	3개
			벽부착형	5kW: 7개	7개
과금형콘센트			5개		
급속	종류	전기용량(kW) 및 갯수	합계: 6개		
	스탠드형	50kW: 3개, 100kW: 3개,	6개		
충전시설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한국기후환경솔루션	운영수량	6개		
	회사명 또는 상호 한국기후환경지속전력	운영수량	15개		

변경 사유	[]충전시설의 위치 [O]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합니다) [O]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산업충전회사(운영수량 : 11개)	한국기후에너지충전회사(운영수량 : 15개)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O]변경신고를 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신고인 **김 안전**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1.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대상 및 주체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해야하는 것인지?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따라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관계법령(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그리고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로서 신고 주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체계적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시 충전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시점은?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에 착수 하기 이전 시점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전기차충전시설 운영 중 다음과 같이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3. 개인이 사용하는 충전기도 신고해야 하는지?

-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취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시설도 증가함에 따라,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신고 대상은 전기차충전시설의 '사용 용도'(공용 또는 개인용)가 아니라,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차충전시설이 [참고 2]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충전시설 신고 시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해당 신고제도는 별도의 심사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로, 신고서 외에 추가적인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5. 기존 사용 중인 충전설비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0972호)은 2025년 5월 27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1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다만, 부칙에서는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는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시행일('25.11.28.)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부칙 <법률 제20972호,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전기차 충전기를 교체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변경신고 시점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항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 운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만약, 전기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경우, 충전시설의 위치 또는 설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충전시설의 규격(용량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순 설비 교체로 충전시설의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기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검사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충전설비 책임보험 가입 시기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합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

8. 신고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 등 벌칙 규정이 있는지?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2의2호에서 법 제21조의3 제3항(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험가입)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충전설비 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으로 대체 가능한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에서 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한편, 제조물책임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 전기적 사고에 대한 포괄적 책임보장을 하지 못하거나,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범위 또는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책임보험은 용도별 건축물(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가입해야 하는 점에서 제조사에서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제조물 책임보험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장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